

II.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현행 세제체계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소득의 현행 세제체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퇴직금 관련 세제체계는 각출, 운용, 급부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급부단계에 적용되는 세제만을 살펴본다.

퇴직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일시금만 있었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다. 1997년에 퇴직보험제도가 도입되고, 2002년부터 연금소득세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퇴직금관련세제는 퇴직소득세제와 연금소득세제로 이원화되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일시금신탁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퇴직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각각 과세되고 있다.

1. 퇴직금 세제 체계¹⁾

먼저 퇴직금관련 소득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래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강제된 것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해고수당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의 실직 이후의 실업급여 또는 은퇴 후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이 더해졌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1개월 임금)을 지급하며, 일시금지급이 원칙이다. 퇴직금제도는 여전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 이하 기술내용은 주로 박홍민·이경희(2002)를 참고하였다.

1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과 같은 비과세퇴직소득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면 퇴직소득금액이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 순차로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를 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퇴직소득공제에는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가 있는데, 전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근로자가 근속한 기간에 따라 <표 II-1>과 같이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표 II-1>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 - 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 - 10년)
20년초과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 - 20년)

퇴직소득공제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산출한다.

<표 II-2>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4천만원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8천만원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초과	1,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현재는 일정한 공제한도(근속연수×12만원)를 가지고 퇴직소득산출세액의 25%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폐지될 예정이다. 퇴직세액공제는 본래 2000년 12월 29일 개정에서 삭제되었으며, 경과조치로 2003년 1월1

일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²⁾

지금까지 살펴본 퇴직소득세 체계에 따르면, 퇴직소득세 적용세율은 근속년수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9%의 최저세율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따라서 일단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에 다른 비과세금융상품이나 저율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이 더욱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큰 연금으로의 전환을 기피하여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2. 퇴직연금 관련 세제 체계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체계는 2000년 대폭 개정되어 2001년부터 각출단계 면세(Exempt), 운용단계 과세이연(Exempt), 급부단계 과세(Tax)되는 EET형 체계가 구축되었다.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적연금 각출금은 사용자 기여분은 전액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되고(소득세법 제12조 4호-하), 개인 기여분은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되고 있다(소득세법 제51조의 3). 개인연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 2에 의해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에 대해 240만원 내에서 불입액을 공제하고, 연금 급부시에 소득공제가 허용된 부분에 만 연

2) 따라서 본 연구는 세액공제가 폐지될 2005년 적용세법을 기준으로 Simulation을 실행하였다.

3) 이 같은 사실은 제4장의 실증분석결과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4) 공적연금은 각출금 납입액이 전액 소득 공제되고 연금 급부시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전형적인 EET형임에 반해, 개인연금은 납입시 소득공제 한도가 있고 연금 급부시에는 소득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제한적인 EET형이라고 볼 수 있다.

1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금소득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계약자가 불입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는 소득세법 제4조, 제14조, 제20조의3, 제47조의2 등에 규정되고 있는데, 퇴직일시금과 달리 분리 과세되지 않고,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연금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공적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의한 연금 및 퇴직보험에 의한 연금, 기타 유사한 소득으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이 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액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1항).

<표 II-3> 연금소득 공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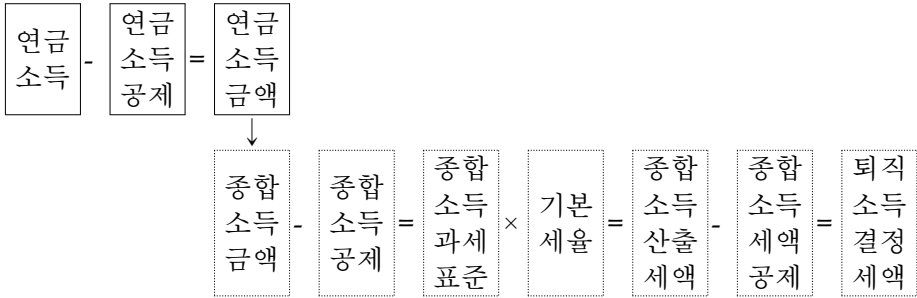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이하	총연금액
25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250만원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35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초과	430만원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주: 600만원이 한도임

이렇게 산출된 연금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의할 점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연금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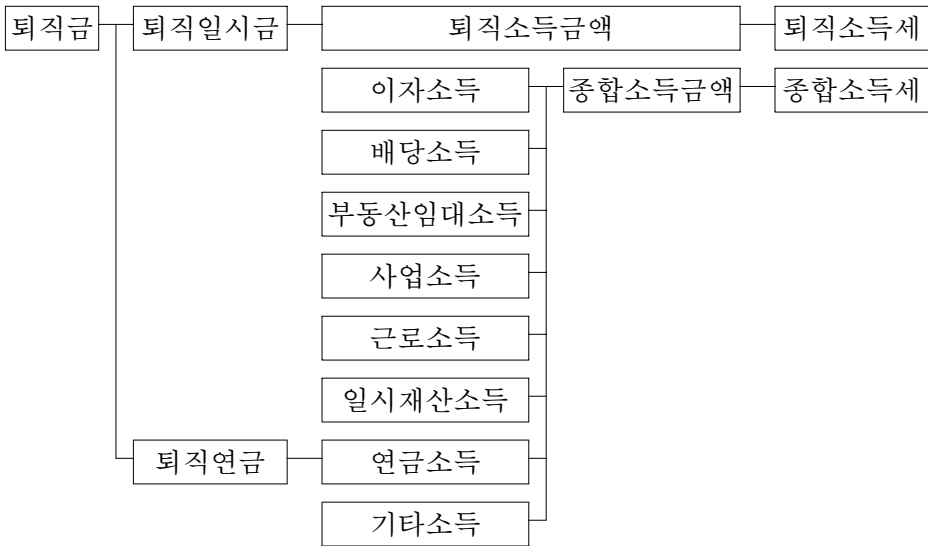
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야 한다.

<그림 II-2> 연금소득세 과세절차



이상과 같이 살펴본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과세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3>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과세흐름



주: 박홍민·이경희 (2002), p. 50에서 재인용.

1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현행 연금소득세제 체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근거하여 연금과세가 EET형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연금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연금소득과세기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두었다.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각출분을 기초로 적립된 부분에서 수령하는 것부터만 연금소득의 과세대상이며, 퇴직보험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수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인연금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⁵⁾

연금소득세제의 문제점을 퇴직소득세제와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하면, 첫째 분리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소득액이 높아져 세액이나 적용한계세율이 이전보다 많을 수 있다. 둘째, 연금소득 공제금액이 퇴직소득세의 퇴직급여비례 및 근속년수 공제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세제상 세액과 한계세율 측면에서 연금소득세제가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5) 공식이란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이다.